

□ 관련규정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0조(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) 및 「같은법 시행규칙」 제48조(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)에 따르면 ① 5천만원 이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② 경매에 부치는 경우, ③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, ④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⑤ 전기·가스·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,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서, 각서, 협정서, 승낙사항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

□ 지적사항

사례1> 무인경비 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였으나 계약서 미작성 시 첨부해야 하는 청구서, 각서, 협정서,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필수 서류를 누락

사례2> '22년 정보화교육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사업으로 계약서 미작성 시 첨부해야 하는 청구서, 각서, 협정서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필수 서류를 누락

□ 업무처리 시 유의 사항

- 계약서 작성의 생략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징구해야 하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